

서울특별시 성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년 12. 13.(금)
도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 11. 6. 권영애 의원 외 21인 발의 (의안번호 391호)
- 나. 회부일자: 2024. 11. 15.
- 다. 상정일자: 제308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2024. 11. 22. 상정 · 의결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권영애 의원)

가. 제안이유

‘빈집 정비’의 근거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불일치하는 법적 근거를 정비하고 빈집실태 조사를 통해 취약한 빈집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효율적으로 정비 및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주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안전한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빈집 정의 규정(안 제2조)
- 2)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3) 빈집 실태조사 의무화(안 제6조)

다. 참고사항

- 1) 관계법령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 2) 예산조치: 필요시 조치
- 3) 사전협의: 도시정비신속추진단
- 4) 입법예고: 2024. 11. 8. ~ 2024. 11. 12.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진만)

가. 개요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불일치 하는 법적 근거를 정비하고, 빈집정비 계획 및 실태조사를 법에 따라 5년으로 명확히 하고자 제출된 안검임.

나. 검토 내용

- 안 제2조(정의)제1호에서 “빈집”의 정의를 ‘법 제2조제1항제1호1)에 따라’로 명확히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2)를 인용하여 단서조항을

-
- 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등”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미분양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 2) 제2조(빈집에서 제외되는 주택)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미분양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1.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의 공공임대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가 건축하여 보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으로서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주택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서를 받은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3.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주택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한 주택
 4. 「주택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준주택. 다만,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

신설하였음.

- 안 제5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에서는 법 제4조제1항3)에 따라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빈집정비계획 수립 후 1년마다 해당 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음.
- 안 제6조(실태조사)에서는 법 제5조제1항4)에 따라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함.

스텔은 제외한다.

5. 별장 등 일시적 거주 또는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

3) 제4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① 시장·군수등은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 또는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빈집정비에 관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거나 시장·군수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빈집정비계획 수립 후 1년마다 해당 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할 수 있다. <개정 2019. 4. 23., 2021. 4. 13.>

1. 빈집정비의 기본방향
2.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3.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계획
4. 빈집의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빈집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제5조(빈집등 실태조사) ① 시장·군수등은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이하 “빈집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거나 시장·군수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등이 수시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3.>

1. 빈집 여부의 확인
2. 빈집의 관리 현황 및 방치기간
3. 빈집 소유권 등의 권리관계 현황
4. 빈집 및 그 대지에 설치된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 등의 현황
5. 그 밖에 빈집 발생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장·군수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 종합 의견

- 본 일부개정안은 ‘빈집 정비’의 근거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빈집정비계획과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 효율적으로 정비 및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주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안전한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회의록 참고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영애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영애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91
----------	-----

발의연월일 : 2024년 11월 6일

발 의 자 : 강수진, 경수현, 고영옥, 권영애,
김경이, 김육영, 박영섭, 소형준,
양순임, 오중균, 이관우, 이용진,
이인순, 이일준, 이호건, 임태근,
임현주, 정기혁, 정병기, 정윤주,
정해숙, 진선아

1. 제안이유

‘빈집 정비’의 근거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불일치 하는 법적 근거를 정비하고 빈집실태 조사를 통해 취약한 빈집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효율적으로 정비 및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주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안전한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빈집 정의 규정(안 제2조)

나.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다. 빈집 실태조사 의무화(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필요시 조치

다. 사전협의: 도시정비신속추진단

라. 입법예고: 2024. 11. 8. ~ 2024. 11. 12.

서울특별시 성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이란”을 “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제5조제1항 중 “수립·시행”을 “5년마다 수립·시행”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빈집정비계획 수립 후 1년마다 해당 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할 수 있다.

제6조 중 “실시할 수 있다”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빈집”이란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단서 신설>	1. ----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 ----- ----- . 다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3. (생략)	2.·3. (현행과 같음)
제5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5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① ----- ----- ----- 5년마다 수립·시행----- ----.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빈집정비계획 수립 후 1년마다 해당 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할 수 있

② (생 략)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u>실시할 수 있다.</u> <단서 신설>	<u>다.</u>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실태조사) ----- ----- ----- ----- 5년마다 <u>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u>
--	---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년 12. 13.(금)
도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 11. 6. 경수현 의원 외 6인 발의 (의안번호 392호)
- 나. 회부일자: 2024. 11. 15.
- 다. 상정일자: 제308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2024. 11. 21. 상정 · 의결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경수현 의원)

가. 제안이유

상위법인 「공동주택관리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감사 요청 시 필요한 주민 동의 비율을 완화하고자 함. 또한 행정처리 기한 상의 현실성을 반영하여 결과통보 기한을 60일로 확대하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관리주체가 통보받은 감사결과를 게시판 등에 공개하는 기한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안 제3조, 안 제11조)
- 2) 감사결과 통보 기한을 변경함(안 제11조)

다. 참고사항

- 1) 관계법령: 「공동주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2) 예산조치: 필요시 조치

3) 사전협의: 주택정책과

4) 입법예고: 2024. 11. 8. ~ 2024. 11. 12.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진만)

가. 개요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조항을 법령에 맞게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나. 검토 내용

- 안 제3조(감사의 요청)제1항 :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감사를 요청할 때에는 감사 요청인 대표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된 감사요청서와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요청인연명부에 관련 자료를 붙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에서 10분의 3을 10분의 2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2023년 10월 24일부터 시행된 법 제93조제2항⁵⁾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임.

5) 제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에게 관리비등의 사용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6. 1. 19., 2017. 3. 21., 2019. 4. 23.>

1호~6호 (생략)

②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제1항제2호,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 요청은 그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24.>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감사 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 **안 제11조(감사결과 처리 및 통보)제1항** ‘구청장은 감사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를 감사요청인 대표자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 각 호의 정보는 제외한다.’ 에서

- 감사결과 통보 기한을 **30일에서 60일로 확대함**으로써 충분한 의견수렴 및 검토 과정을 통해 부당한 처분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한을 연장하였으며,
- 법 제27조제2항을 **법 제27조제3항⁶⁾**으로 변경한 것은 2021년 8월 10

는 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를 요청한 입주자등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감사 대상이 되는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할 경우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해당 전문가와 함께 영업소·관리사무소 등을 조사할 수 있다.
-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감사 요청 및 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명령, 조사 또는 검사, 감사의 결과 등을 통보하는 경우 그 내용을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23.>
- ⑧ 관리주체는 제7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고 입주자등의 열람, 복사 요구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9. 4. 23.>

6) 2021년 8월 10일, 법 제27조제2항의 신설로 제3항으로 변경

제27조(회계서류의 작성·보관 및 공개 등)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의 징수·보관·예치·집행 등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하여 장부를 월별로 작성하여 그 증빙서류와 함께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거나 보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제1항에 따른 장부나 증빙서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열람을 요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제외하고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일, 법 제27조에서 제2항이 신설됨에 따라 제3항으로 변경되어 법 조항 변경 사항을 반영한 것임.

- 안 제11조(감사결과 처리 및 통보)제2항 :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게시판, 서울특별시통합정보마당에 공개하여야 한다” →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게시판, 서울특별시통합정보마당에 7일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로 변경한 것으로, 이는 법 시행령 제96제2항7)에 따라 감사결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2.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제27조(회계서류 등의 작성·보관 및 공개 등)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장부 및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거나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22. 6. 10.>

1. 관리비등의 징수·보관·예치·집행 등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하여 월별로 작성한 장부 및 그 증빙서류: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2. 제7조 및 제25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관련 증빙서류: 해당 계약 체결일부터 5년간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서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21. 8. 10., 2022. 6. 10.>

③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제1항에 따른 장부나 증빙서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열람을 요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제외하고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0.>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2.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목개정 2022. 6. 10.]

7) 제96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① 법 제9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9. 10. 22.>

1호~9호 생략

② 법 제93조제7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리주체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통보를 받

공개 기한 및 공개 기간을 명확히 명시 한 것임.

다. 종합 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감사요청 동의 기준을 전체입주자 또는 사용자 10분의 3을 10분의 2로 변경하고, 감사결과 공개 기한을 10일 이내, 공개 기간을 7일 이상으로 명시하였으며 그 밖에 맞춤법 및 항의 구분이 없는 조문을 수정(안 제4조)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회의록 참고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7일 이상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동별 게시판에는 통보받은 일자, 통보한 기관 및 관계 부서, 주요 내용 및 조치사항 등을 요약하여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19. 10. 22.>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수현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수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92
----------	-----

발의연월일 : 2024년 11월 6일

발의자 : 경수현, 권영애, 박영섭, 양순임,
정병기, 정윤주, 진선아

1. 제안이유

상위법인 「공동주택관리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감사 요청 시 필요한 주민 동의 비율을 완화하고자 함. 또한 행정처리 기한상의 현실성을 반영하여 결과통보 기한을 60일로 확대하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관리주체가 통보받은 감사결과를 게시판 등에 공개하는 기한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안 제3조, 안 제11조)
- 나. 감사결과 통보 기한을 변경함(안 제11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 다. 사전협의 : 주택정책과
- 라. 입법예고 : 2024. 11. 8. ~ 2024. 11. 12.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 중 “3”을 “2”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세대 당”을 “세대당”으로 한다.

제4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 “30일”을 “60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법 제27조제2항”을 “법 제27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게시판, 서울특별시통합정보마당에”를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게시판, 서울특별시통합정보마당에 7일 이상”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감사의 요청) ①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요청할 때에는 감사요청인 대표(이하 “대표자”라 한다)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된 감사요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요청인연명부(별지 제2호서식)에 관련 자료를 붙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요청인은 각 세대 당 1인으로 한다.	제3조(감사의 요청) ① ----- ----- ----- ----- ----- ----- 2 ----- -----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감사계획 수립) ① (생략)	제4조(감사계획 수립) (현행 제1항과 같음)
제11조(감사결과 처리 및 통보) ① 구청장은 감사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를 감사요청인 대표자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 각 호의 정보는 제외한다.	제11조(감사결과 처리 및 통보) ① ----- ----- 60일 ----- ----- ----- ----- -----.
②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관리주	② -----

체는 <u>게시판, 서울특별시통합정보마당에</u> 공개하여야 한다. ③ (생 략)	--- <u>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게시판, 서울특별시통합정보마당에 7일 이상</u> ---. ③ (현행과 같음)
---	--

서울특별시 성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년 12. 13.(금)
도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 11. 6. 이용진 의원 외 19인 발의 (의안번호 393호)
- 나. 회부일자: 2024. 11. 15.
- 다. 상정일자: 제308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2024. 11. 25. 상정 · 의결 (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이용진 의원)

가. 제안이유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와 함께 공공장소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방치로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통행이 방해받고 있음. 이에 무단방치 금지를 명문화하는 무단방치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무단방치 금지 규정을 신설함(안 제8조)

다. 참고사항

- 1)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 2) 예산조치: 필요시 조치
- 3) 사전협의: 교통행정과

4) 입법예고 : 2024. 11. 8. ~ 2024. 11. 12.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진만)

가. 개요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와 함께 공공장소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방치로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거나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무단방치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자 제출된 안전임.

나. 검토 내용

- 안 제8조(무단방치 금지) 조항을 신설하여 보행자의 안전과 원활한 차량통행을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방치 금지를 명시하였으며, 위반 시 「도로법」 8), 「도로교통법」 9)에 따라 이동·보관·매각하는 등 필

8) 제74조(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①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에 따르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도로에 있는 적치물 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반복적, 상습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2. 도로의 통행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적치물 등의 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는 도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거된 적치물 등의 보관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 반환되지 아니한 적치물 등의 귀속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제35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32조·제33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하여 주차하고 있는 차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그 곳으로부터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경찰공무원
2. 시장등(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명하는 공무원(이하 “시·군공무원”이라 한다)

②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제1항의 경우 차의 운전자나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그 차의 주차방법을 직접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

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다. 종합 의견

- 본 일부개정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도모에 이바지하고 편리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나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하게 할 수 있다.

③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제2항에 따라 주차위반 차를 관할 경찰서나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시킨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차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차의 관리에 관한 위탁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나 운전자에게 신속히 알리는 등 반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 차의 사용자나 운전자의 성명·주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⑤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차의 반환에 필요한 조치 또는 공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차의 사용자나 운전자가 조치 또는 공고를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차위반 차의 이동·보관·공고·매각 또는 폐차 등에 들어간 비용은 그 차의 사용자가 부담한다. 이 경우 그 비용의 징수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를 적용한다.

⑦ 제5항에 따라 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한 경우 그 차의 이동·보관·공고·매각 또는 폐차 등에 들어간 비용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그 차의 사용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차의 사용자에게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법」에 따라 그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제36조(차의 견인 및 보관업무 등의 대행) ①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제35조에 따라 견인하도록 한 차의 견인·보관 및 반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등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차의 견인·보관 및 반환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등이 갖추어야 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과 그 밖에 업무의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차의 견인·보관 및 반환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조치와 교육을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차의 견인·보관 및 반환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등의 담당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은 적법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회의록 참고

6. 심사결과: 수정가결

가. 수정 이유

- “도로교통법” 자구를 “법”으로 정의하여 반복되는 문구를 간소화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동·보관에 따른 적용 법 및 비용 징수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제8조제2항의 관련 법을 수정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신설함.

나. 수정 내용

- 안 제2조 중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나목**”을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9호나목**”으로 제3조제2항 중 “**「도로교통법」에**”를 “**법에**”로 수정함.
- 제8조제2항 중 “**「도로교통법」**”을 “**법 제35조 및 36조, 「도로법」 제74조 및 「도로법 시행령」 제75조**”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함.
 - ③ 구청장은 무단방치 등으로 인해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하는 경우, 「도로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소요 비용을 개인형 이동장치의 소유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393
----------	--------

제안 연월일: 2024년 11월 6일

제안 자: 이용진 의원

1. 수정이유

- “도로교통법” 자구를 “법”으로 정의하여 반복되는 문구를 간소화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동·보관에 따른 적용 법 및 비용 징수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제8조제2항의 관련 법을 수정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신설함.

2. 주요내용

- 안 제2조 중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나목”을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9호나목”으로
제3조제2항 중 “「도로교통법」에”를 “법에”로 수정함.
- 제8조제2항 중 “「도로교통법」”을 “법 제35조 및 36조, 「도로법」 제74조 및 「도로법 시행령」 제75조”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함.
 - ③ 구청장은 무단방치 등으로 인해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하는 경우, 「도로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소요 비용을 개인형 이동장치의 소유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3. 참고사항

- 예산조치: 해당 없음
- 기타사항: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 중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나목”을 “「도로교통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9호나목”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도로교통법」 에”를 “법에”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도로교통법」 ”을 “법 제35조 및 36조, 「도로법」 제74조 및 「도로법 시행령」 제75조”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구청장은 무단방치 등으로 인해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하는 경우, 「도로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소요 비용을 개인형 이동장치의 소유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 전동	제2조(정의) ----- ----- 「도로교통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9호 나목----- ----- ----- -----

킥보드, 전동휠 등 소형·저속
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생략)

② 구민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함에 있어 「도로교통법」
에 따른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
하는 등 이용자의 안전의무를
준수하여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
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
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무단방치 금지) ① (생략)

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개
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도로교
통법」에 따라 이동·보관·매
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

제3조(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
----- 법에 -----

-----.

제8조(무단방치 금지) ① (현행과
같음)

② -----
----- 법 제35조
및 36조, 「도로법」 제74조 및
「도로법 시행령」 제75조-----
-----.

③ 구청장은 무단방치 등으로
인해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
보관하는 경우, 「도로법 시행
령」 제76조제2항에 따라 산정
된 소요 비용을 개인형 이동장
치의 소유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나목”을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9호나목”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도로교통법」에”를 “법에”로 한다.

제8조를 제9조로 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무단방치 금지) ① 누구든지 도로, 그 밖에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법 제35조 및 36조, 「도로법」 제74조 및 「도로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이동·보관·매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무단방치 등으로 인해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하는 경우, 「도로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소요 비용을 개인형 이동장치의 소유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소형·저속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	제2조(정의) ----- -----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9호나목----- ----- ----- ----- ----- ----- --.
제3조(책무) ① (생략) ② 구민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함에 있어 「도로교통법」에 따른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등 이용자의 안전의무를 준수하여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 ----- 법에 ----- ----- ----- ----- ----- ----- -----.
<신설>	제8조(무단방치 금지) ① 누구든지 도로, 그 밖에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개

<u>제8조</u> (생 략)	<u>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법 제35조 및 36조, 「도로법」 제74조 및 「도로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이동·보관·매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u> <u>③ 구청장은 무단방치 등으로 인해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하는 경우, 「도로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소요 비용을 개인형 이동장치의 소유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u> <u>제9조</u> (현행 제8조와 같음)
-------------------------	--

서울특별시 성북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년 12. 13.(금)
도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 11. 6. 양순임 의원 외 14인 발의(의안번호 394호)
- 나. 회부일자: 2024. 11. 15.
- 다. 상정일자: 제308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2024. 11. 25. 상정·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양순임 의원)

가. 제안이유

이 조례는 현수막 제작 시 친환경 소재 사용과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안함.

나. 주요내용

- 1) 목적(안 제1조)
- 2)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3)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안 제4조)
- 4) 재정지원(안 제5조)

다. 참고사항

- 1)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 예산조치: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필요시 조치
- 3) 부서협의: 건설관리과
- 3) 입법예고: 2024. 11. 8. ~ 2024. 11. 12.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진만)

가. 개요

- 본 조례안은 현수막이 폐기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 등 유해 물질 배출로 심각한 환경오염을 야기하고 탄소중립 및 자원 순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일회성 폐기물인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는 등 환경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양순임 의원 등 15명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제출된 안건임.

나. 검토 내용

-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 안 제3조(구청장의 책무)에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¹⁰⁾에 따라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실행계획 수립·시행, 사업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음.
- 안 제4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에서는 구청장은 성북구가 제작 또는 용역을 통해 게시하는 공공용 현수막 및 사업용 현수막에 대하여 친환경 소재 사용 현수막 활성화를 추진하고,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에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적으로 게시할 수 있도록 함. 또한 관내의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친환경 소재 현수막 우선 게시를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안 제5조(재정지원)에서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 재

10)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과 그 위해를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하여 환경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21. 1. 5.>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의 환경계획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21. 1. 5.>

활용 사업에 대해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안 제6조(교육 및 홍보)에서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안 제7조(협력체계 구축)에서는 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공공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함.
- 2023년 12월, 전국 최초로 조례를 제정한 파주시에 이어 37개 지자체가 해당 조례를 제정할 정도로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을 위한 행정 지원 및 사업참여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폐현수막 자원순환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을 위해 제도(입법)정비, 예산지원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중임.

다. 종합 의견

- 본 조례안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하여 제도적 지원 근거를 법제화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익적 가치가 있는 조례로 의의가 있고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타 법률과의 충돌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본 조례안은 의원발의로 추진되는 조례지만 추후 집행부에서 예산반영이나 구체적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공포 후 시행 가능한 자치입법이 되도록 하여 선언적 조례로 사장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회의록 참고

6. 심사결과: 수정가결

가. 수정 이유

- 안 제5조의 자구를 수정하고 폭넓은 사업 추진을 위해 그 범위를 확대함

나. 수정 내용

-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비”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함.

3. 교육 및 홍보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394
----------	--------

제안 연월일: 2024년 11월 6일

제안자: 양순임 의원

1. 수정이유

- 안 제5조의 자구를 수정하고 폭넓은 사업 추진을 위해 그 범위를 확대함

2. 주요내용

-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비”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함.

3. 교육 및 홍보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참고사항

- 예산조치: 해당 없음
- 기타사항: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수정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비**”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교육 및 홍보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수정안
제5조(재정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u>경비</u> <u>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u>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재정지원) ----- ----- <u>경비</u> - ----- -----.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u><신설></u>	<u>3. 교육 및 홍보 사업</u>
<u><신설></u>	<u>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u>

서울특별시 성북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과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
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
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에 따라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실행계획 수립·시행
2.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사업에 대한 지원

3. 그 밖에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 ① 구청장은 공공목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가 제작 또는 용역을 통해 게시하는 공공용 현수막 및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용 현수막에 대하여 단계별 계획을 통해 친환경 소재 사용 현수막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에 있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적으로 게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관내의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친환경 소재 현수막 우선 게시를 권고할 수 있다.

제5조(재정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2.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3. 교육 및 홍보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도시계획시설 운영에 관한 의견청취(안)

심 사 보 고 서

2024년 12. 13.(금)
도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 11. 7. 성북구청장 제출 (의안번호 361호)
- 나. 회부일자: 2024. 11. 15.
- 다. 상정일자: 제308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2024. 11. 21. 상정·의결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조운기 도시관리국장)

가. 제안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라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 보고받은 지방의회는 90일 이내에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나. 관련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제85조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다. 제도 연혁

- 2000. 1. 28. 매수청구제도 및 자동실효제도 도입(도시계획법)

매수청구제 - 결정 후 10년이내 시행되지 않는 시설의 지목상대지[垵] 소유자는 매수청구 가능
자동실효제 - 미집행시설은 결정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다음날 효력상실

○ 2011. 4. 1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보고제도 도입(국토계획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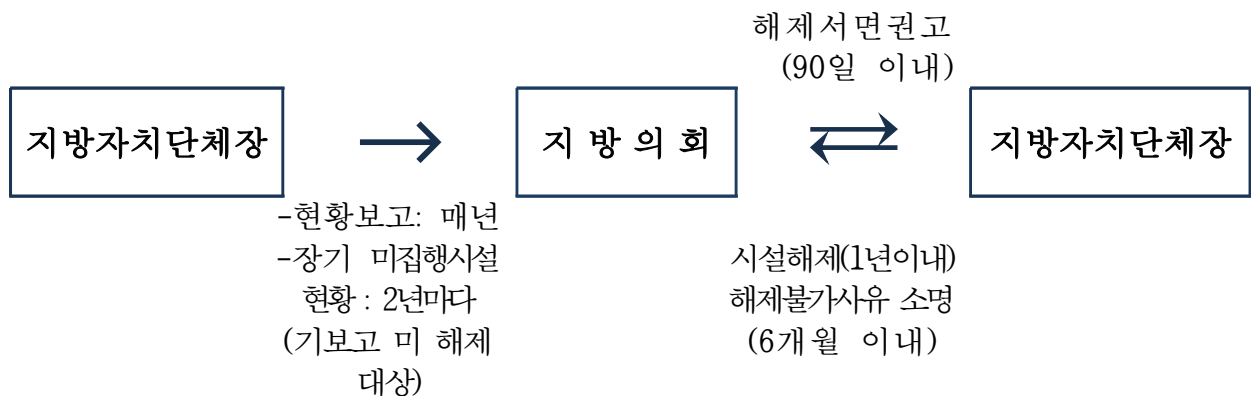
지방의회는 단계별 집행계획 또는 예산반영 가능성, 중장기적인 사회적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제권고 가능

○ 2012. 11. 1. 자치구 관리 시설은 자치구가 의회에 보고(서울시 도시계획조례)

○ 2017. 9. 20.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시 의회 의견청취제도 도입(국토계획법)

단계별집행계획에 따른 예산확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집행 계획을 수립할 때 의회 의견청취

라. 의회 보고 및 해제권고 절차



마. 의견 청취 대상

○ 단계별집행계획: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고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계획

바. 의회 보고 대상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실시계획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

사. 성북구의회 의견 청취 및 보고 목록

○ 의견 청취 대상: 6건

○ 의회 보고 대상: 5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조서

(단위 : 백만원)

사업 · 시설 부문	사업명 (위치)	우선 순위	사업 기간	사업 개요	총 사업비	계획기간중 사업비										실효 시기
						총계	국비	지방비			비재정적		1단계	2-1단계	2-2단계	
								계	시비	구비	민간 투자	공공 기여	'1년~ '3년차	'4년~ '5년차	'6년차 이후	
도로	정릉동 138-13~966-329	1	2030 ~	B=8m L=146m	409	409		409		409					○	2026. 10.
도로	장위동 55-25~55-21	2	2030 ~	B=10m L=26m	796	796		796		796					○	2028. 4.
도로	상월곡동 75-54 ~ 하월곡동 20	3	2030 ~	B=6m L=149m	2,523	2,523		2,523		2,523					○	2029. 1.
도로	하월곡동18-49~ 상월곡동28-45	4	2030 ~	B=15m L=593m	16,095	16,095		16,095		16,095					○	2029. 1.
도로	성북동 246~303	5	2030 ~	B=8m L=293m	739	739		739		739					○	2030.10.
도로	정릉동 147-4~484-1	6	2030 ~	B=6m L=151m	5,970	5,970		5,970		5,970					○	2040. 7.

성북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총괄현황 (5건)

연번	시설명	위 치	규 모			고시일	미집행 사유	단계별 집행 계획	비고
			폭원(m)	연장(m)	면적(㎡)				
1	도로	정릉동 138-13~966-329	8	146	1,168	2006. 10. 9.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도로확보 필요	2-2	정릉생활권
2	도로	장위동 55-25~55-21	10	26	260	2008. 4. 3.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도로확보 필요	2-2	석관지구 중심
3	도로	상월곡동 75-54 ~ 하월곡동 20	6	149	894	2009. 1. 29.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도로확보 필요	2-2	동덕여대 주변지역
4	도로	하월곡동18-49 ~ 상월곡동28-45	15	593	8,895	2009. 1. 29.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도로확보 필요	2-2	동덕여대 주변지역
5	도로	성북동 246~303	8	293	2,344	2010. 10. 21.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도로확보 필요	2-2	성북동역사 문화지구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진만)

가. 개요

- 본 의견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48조제3항¹¹⁾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항¹²⁾에 따라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구의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임.

나. 검토 내용

- 「국토계획법」 제48조제1항¹³⁾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고시

11) 제48조(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고시한 도시·군계획시설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설치하기로 한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황과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 4. 14., 2013. 3. 23., 2013. 7. 16.>

12) 제42조(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 및 해제권고)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이하 이 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는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 중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도시·군계획시설 또는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군계획시설(이하 이 조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정례회 또는 임시회의 기간 중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를 거칠 수 있다. <신설 2012. 4. 10., 2014. 11. 11., 2021. 12. 16.>

1.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등의 전체 현황(시설의 종류, 면적 및 설치비용 등을 말한다)
2.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등의 명칭, 고시일 또는 변경고시일, 위치, 규모, 미집행 사유, 단계별 집행계획, 개략 도면, 현황 사진 또는 항공사진 및 해당 시설의 해제에 관한 의견
3. 그 밖에 지방의회의 심의·의결에 필요한 사항

13) 제48조(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 ①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

된 도시계획시설이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은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시설결정 효력이 상실됨.

- 아울러,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거나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최초로 지방의회에 보고한 때부터 2년마다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보고 받은 지방의회는 대통령령(제42조제3,4항)¹⁴⁾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음.
- 또한 단계별집행계획에 따른 예산확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토계획법 제85조¹⁵⁾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¹⁶⁾에 따라 장기미집행

· 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11. 4. 14

14) 제42조(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 및 해제권고)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보고한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등 중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해제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등에 대하여 최초로 지방의회에 보고한 때부터 2년마다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 보고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2. 4. 10., 2014. 11. 11.>

④ 지방의회는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등에 대하여 해제를 권고하는 경우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고가 지방의회에 접수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제를 권고하는 서면(도시·군계획시설의 명칭, 위치, 규모 및 해제사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신설 2012. 4. 10.>

15) 제85조(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2017. 12. 26.>

16) 제95조(단계별집행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도시계획시설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해 보고하고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여야 함.

- 의회 의견 청취 대상은 6건이며, 보고 대상은 5건의 도로로 주요내용은, 정릉동 138-13 ~ 966-329, 장위동 55-25 ~ 55-21, 상월곡동 75-54 ~ 하월곡동 20, 하월곡동18-49 ~ 상월곡동 28-45, 성북동 246~303, 정릉동 147-4 ~ 484-1임.

다. 종합 의견

- 본 청취안은 도시계획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그 현황을 보고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제1항에 따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구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며 적법한 절차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회의록 참고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2. 4. 10., 2017. 9. 19.>

도시계획시설 운영에 관한 의견청취(안)



성 북 구
(도시계획과)

도시계획시설 운영에 관한 의견청취(안)

의안 번호	361
----------	-----

제출년월 : 2024년 11월

제출자 : 성북구청장

1. 제안사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라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 보고받은 지방의회는 90일 이내에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관련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제85조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3. 제도연혁

- 2000. 1. 28. 매수청구제도 및 자동실효제도 도입(도시계획법)

매수청구제 - 결정 후 10년 이내 시행되지 않는 시설의 지목상대지[塙] 소유자는 매수청구 가능
자동실효제 - 미집행시설은 결정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다음날 효력상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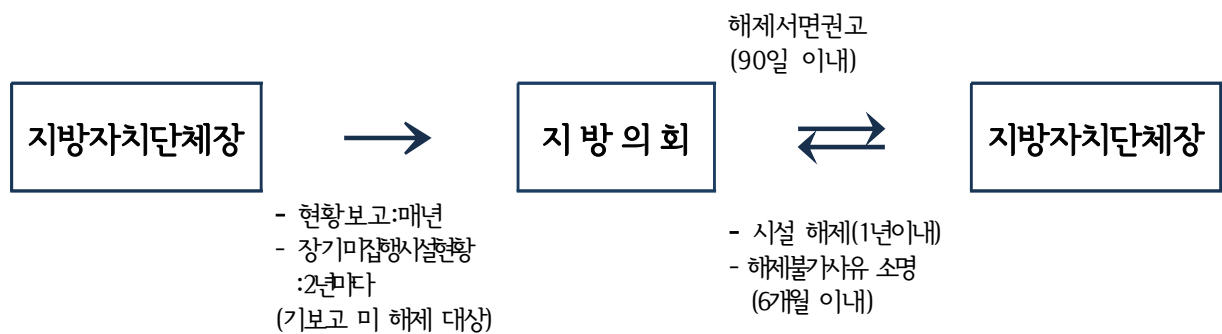
- 2011. 4. 1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보고제도 도입(국토계획법)

지방의회는 단계별 집행계획 또는 예산반영 가능성, 중장기적인 사회적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제권고 가능

- 2012. 11. 1. 자치구 관리 시설은 자치구가 의회에 보고(서울시 도시계획조례)
- 2017. 9. 20.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시 의회 의견청취제도 도입(국토계획법)

단계별집행계획에 따른 예산확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할 때 의회 의견청취

4. 의회 보고 및 해제권고 절차



5. 의견 청취 대상

- 단계별집행계획 :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고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자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계획

6. 의회 보고 대상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 (실시계획인가나 그에 상응하는 절차)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

7. 성북구의의회 의견 청취 및 보고 목록

- 의견 청취 대상 : 6건
- 의회 보고 대상 : 5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조서

(단위 : 백만원)

사업 · 시설 부문	사업명 (위치)	우선 순위	사업 기간	사업 개요	총 사업비	계획기간중 사업비									실효 시기	
						총계	국비	지방비			비재정적		1단계	2-1단계		2-2단계
								계	시비	구비	민간 투자	공공 기여	'1년~ '3년차	'4년~ '5년차		'6년차 이후
도로	정릉동 138-13~966-329	1	2030 ~	B=8m L=146m	409	409		409		409					○	2026. 10.
도로	장위동 55-25~55-21	2	2030 ~	B=10m L=26m	796	796		796		796					○	2028. 4.
도로	상월곡동 75-54 ~ 하월곡동 20	3	2030 ~	B=6m L=149m	2,523	2,523		2,523		2,523					○	2029. 1.
도로	하월곡동18-49~ 상월곡동28-45	4	2030 ~	B=15m L=593m	16,095	16,095		16,095		16,095					○	2029. 1.
도로	성북동 246~303	5	2030 ~	B=8m L=293m	739	739		739		739					○	2030.10.
도로	정릉동 147-4~484-1	6	2030 ~	B=6m L=151m	5,970	5,970		5,970		5,970					○	2040. 7.

성북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총괄현황 (5건)

연번	시설명	위 치	규 모			고시일	미집행 사유	단계별 집행계 획	비고
			폭원(m)	연장(m)	면적(m ²)				
1	도로	정릉동 138-13~966-329	8	146	1,168	2006. 10. 9.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도로확보 필요	2-2	정릉생활권
2	도로	장위동 55-25~55-21	10	26	260	2008. 4. 3.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도로확보 필요	2-2	석관지구 중심
3	도로	상월곡동 75-54 ~ 하월곡동 20	6	149	894	2009. 1. 29.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도로확보 필요	2-2	동덕여대 주변지역
4	도로	하월곡동18-49~ 상월곡동28-45	15	593	8,895	2009. 1. 29.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도로확보 필요	2-2	동덕여대 주변지역
5	도로	성북동 246~303	8	293	2,344	2010. 10. 21.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도로확보 필요	2-2	성북동역사 문화지구

연번	1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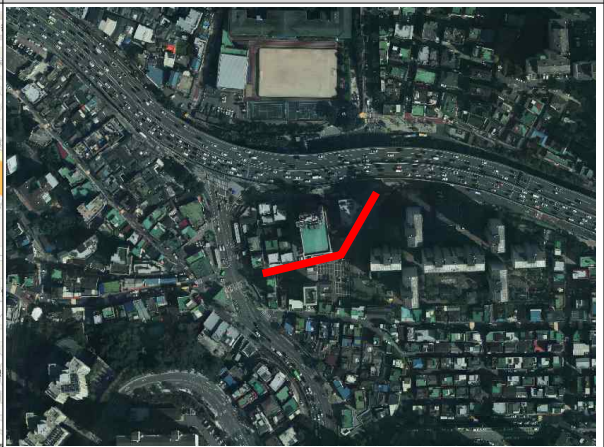
시설명(종류)	도로(소로2류)	위 치	정릉동 138-13 ~ 966-329
---------	----------	-----	----------------------

토지이용 규제현황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준주거지역	도시 계획 결정 고 시 일	결정근거 서울시 고시 제2006-340호 2006. 10. 9.
	관련계획	정릉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시설의 규모	구분	합계	집행	미집행	소요사업비 (단위: 백만원)	합 계	409
	면적(㎡)	1,168	-	1,168		보상비	148
	폭원(m)	8	-	8		공사비	261
	연장(m)	146	-	146			

이용현황	- 현황도로(8~9m) 이용 중이며, 서측 가각부를 제외하고 전체 구간 국공유지임						
미집행사유	- 정릉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도로 부지 확보 필요						

위치도	위성사진
-----	------



현황사진1



현황사진2



연번	2
----	---

시설명(종류)	도로(소로1류)	위 치	장위동 55-25 ~ 55-21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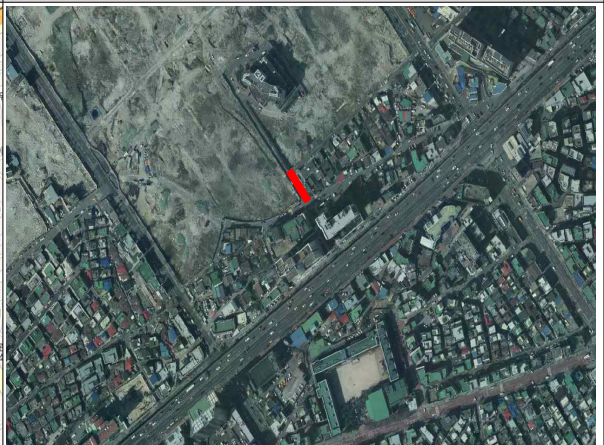
토지이용 규제현황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제2종일반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도시 계획 결정	결정근거	서울시 고시 제2008-111호
	관련계획	석관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장위재정비촉진지구(장위4)		고 시 일	2008. 4. 3.

시설의 규모	구분	합계	집행	미집행	소요사업비 (단위: 백만원)	합 계	796
	면적(㎡)	260	-	260		보상비	741
	폭원(m)	10	-	10		공사비	55
	연장(m)	26	-	26			

이용현황	- 현황도로(8m) 이용 중이며, 도로 우측편 가각부 미개설 - 도로 좌측편은 장위4주택재개발 구역(사업시행인가 2013. 6.)에 포함되어 2m 확폭 예정						
------	--	--	--	--	--	--	--

미집행사유	- 석관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도로 부지 확보 필요						
-------	---------------------------------	--	--	--	--	--	--

위치도				위성사진			
-----	--	--	--	------	--	--	--



현황사진1				현황사진2			
-------	--	--	--	-------	--	--	--



연번	3
----	---

시설명(종류)	도로(소로3류)	위 치	상월곡동 75-54 ~ 하월곡동20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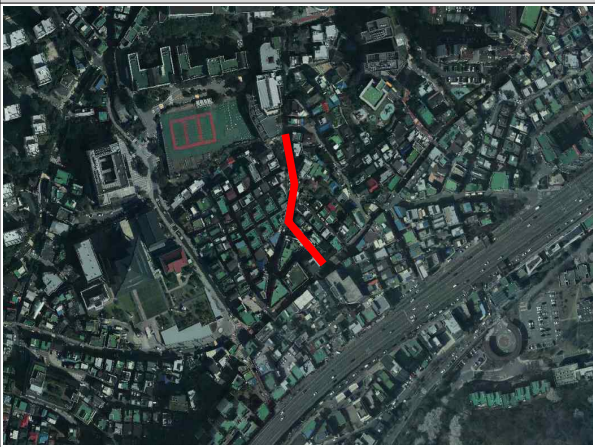
토지이용 규제현황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제2종일반주거지역	도시 계획 결정	결정근거	서울시 고시 제2009-35호
	관련계획	동덕여대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고 시 일	2009. 1. 29.

시설의 규모	구분	합계	집행	미집행	소요사업비 (단위: 백만원)	합 계	2,523
	면적(㎡)	894	-	894		보상비	2,304
	폭원(m)	6	-	6		공사비	219
	연장(m)	149	-	1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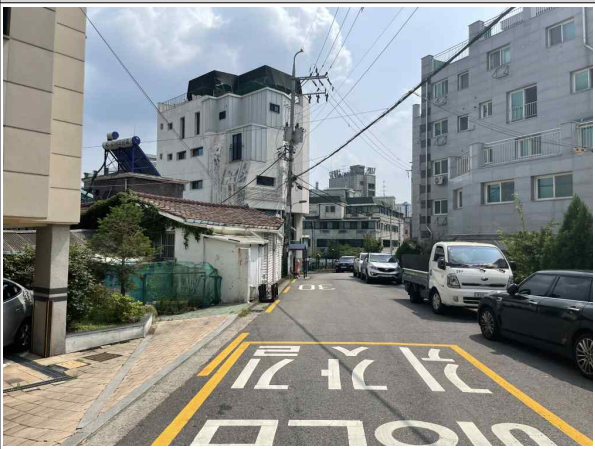
이용현황	- 현황도로(4~6m) 이용 중이나, 도로 중간 건축물 및 단차로 도로가 일부 미개설 됨
------	---

미집행사유	- 동덕여대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도로 확보 필요
-------	---------------------------------

위치도	위성사진
-----	------



현황사진1	현황사진2
-------	-------



연번	4
----	---

시설명(종류)	도로(중로3류)	위 치	하월곡동 18-49 ~ 상월곡동 28-45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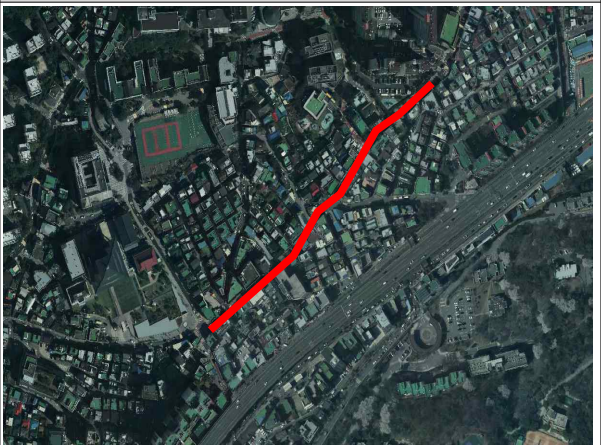
토지이용 규제현황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도시 계획 결정	결정근거	서울시 고시 제2009-35호
	관련계획	동덕여대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고 시 일	2009. 1. 29.

시설의 규모	구분	합계	집행	미집행	소요사업비 (단위: 백만원)	합 계	16,095
	면적(㎡)	8,895	-	8,895		보상비	14,377
	폭원(m)	15	-	15		공사비	1,718
	연장(m)	593	-	593			

이용현황	- 8~15m 도로로 이용 중이며 일부 도로 폭원(15m) 미확보되었으나 도로 기능상 문제없음
------	--

미집행사유	- 동덕여대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도로 확보 필요
-------	---------------------------------

위치도	위성사진
-----	------



현황사진1	현황사진2
-------	-------



연번	5
----	---

시설명(종류)	도로(소로2류)	위 치	성북동 246 ~ 303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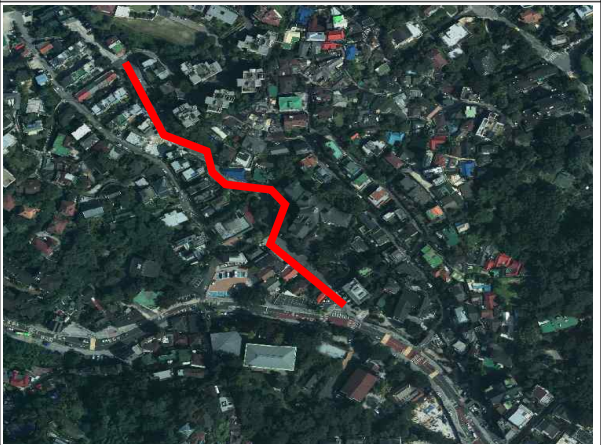
토지이용 규제현황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제1종일반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도시 계획 결정	결정근거	서울시 고시 제2010-364호
	관련계획	성북동 역사문화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고 시 일	2010. 10. 21.

시설의 규모	구분	합계	집행	미집행	소요사업비 (단위: 백만원)	합 계	739
	면적(㎡)	2,344	-	2,344		보상비	215
	폭원(m)	8	-	8		공사비	524
	연장(m)	293	-	293			

이용현황	- 현황도로(6~8m) 이용 중이며, 사유지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도로 기능상 문제 없음.
------	--

미집행사유	- 성북동 역사문화지구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도로 부지 확보 필요
-------	-------------------------------------

위치도	위성사진
-----	------



현황사진1	현황사진2
-------	-------



연번	6
----	---

시설명(종류)	도로(소로3류)	위 치	정릉동 147-4 ~ 484-1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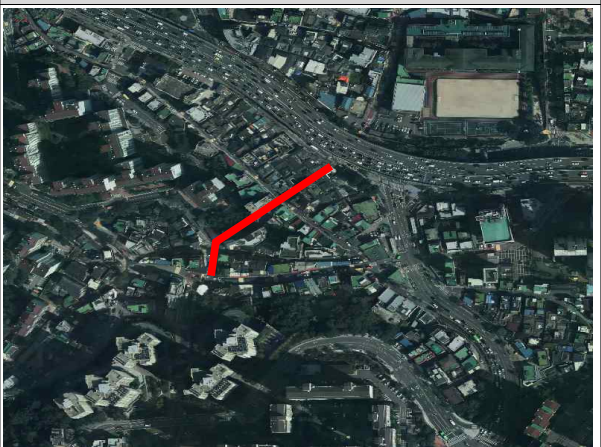
토지이용 규제현황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준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도시 계획 결정	결정근거	서울시 고시 제2020-320호
	관련계획	정릉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고 시 일	2020. 7. 23.

시설의 규모	구분	합계	집행	미집행	소요사업비 (단위: 백만원)	계	5,970
	면적(㎡)	906	-	906		보상비	5,749
	폭원(m)	6	-	6		공사비	221
	연장(m)	151	-	151			

이용현황	- 현황도로(2~6m) 이용 중 - 도로 북측은 폭 2m 골목길로 다수 건축물 저축됨.						
------	---	--	--	--	--	--	--

미집행사유	- 정릉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도로 부지 확보 필요						
-------	----------------------------------	--	--	--	--	--	--

위치도				위성사진			
-----	--	--	--	------	--	--	--



현황사진1				현황사진2			
-------	--	--	--	-------	--	--	--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년 12. 13.(금)
도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 11. 7. 성북구청장 제출 (의안번호 362호)
- 나. 회부일자: 2024. 11. 15.
- 다. 상정일자: 제308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2024. 11. 21. 상정 · 의결 (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조운기 도시관리국장)

가. 제안이유

구민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정원도시의 조성과 정원문화의 발굴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복리 증진과 생활문화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조례의 목적 및 정원 관련 정의(안 제1조~제2조)
- 2)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3) 정원문화의 육성, 발굴, 진흥 및 정원문화 확산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제6조)
- 4) 마을정원사의 양성, 인증, 운용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8조)
- 5) 포상 및 준용(안 제9조~제10조)

다. 참고사항

- 1) 관계법령: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2) 예산조치: 시비지원
- 3) 입법예고: 2024. 09. 19. ~ 10. 10. (21일간)
 - 방 법: 성북구보 및 홈페이지
 - 결 과: 의견제출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진만)

가. 개요

- 본 제정조례안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민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정원도시의 조성 및 정원문화의 발굴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복리 증진과 생활문화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 2015년부터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정원이 지역 주민들에게 주는 정서 및 치유적 역할과 관광적 효과가 있는 등 긍정적 평가가 이루어지면서 각 지자체에서는 국가정원, 지방정원, 민간정원, 공동체정원 등 **법정정원**¹⁷⁾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내며 이를

17)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수목원 및 정원의 구분) ② 정원은 조성·운영 주체, 기능 및 주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가정원: 국가가 조성·운영하는 정원
2. 지방정원: 지방자치단체가 조성·운영하는 정원
3. 민간정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조성·운영하는 정원
4. 공동체정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법인, 마을·공동주택 또는 일정지역 주민들이 결성한 단체 등(이하 “공동체”라 한다)이 공동으로 조성·운영하는 정원
5. 생활정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조성·운영하는 정원으로서 휴식 또는 재배·가꾸기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휴공간에 조성하는 개방형 정원
6. 주제정원
 - 가. 교육정원: 학생들의 교육 및 놀이를 목적으로 조성하는 정원
 - 나. 치유정원: 정원치유를 목적으로 조성하는 정원
 - 다. 실습정원: 정원 설계, 조성 및 관리 등을 통하여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지정 받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추세임.

정원이 가지는 치유기능, 소통과 교류의 공간, 기후조절, 미세먼지 저감, 일자리 창출, 교육, 도시 및 건물외관 개선 등 다양한 긍정적 기능과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정원 조성 및 관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임.

나. 검토 내용

- 안 제1조(목적)에서는 이 조례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북구의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생활문화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였고,
- 안 제2조(정의)에서는 정원, 정원문화, 마을정원사에 대해 규정하였음.
- 안 제3조(구청장의 책무)에서는 구청장은 정원문화에 대한 구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였으며,
- 안 제4조(정원문화의 육성 등)에서는 구청장이 정원문화 활동을 위한 시설 및 제반여건 조성, 정원문화시설 및 정원문화프로그램의 조성·개발·운영, 지역별 문화적 특색을 살리고 자연환경과 어울릴 수 있으며 구민과 함께 만드는 정원을 조성하도록 명시하였음.
- 안 제5조(정원문화의 발굴·진흥 등)에서는 구청장은 우수한 정원문화의 발굴·진흥 및 정원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수집·보급 및 관리, 정원의 유지관리 및 전시, 기술지도 및 교육, 정보교류 및 협력, 자연학습, 행사, 강연회 및 박람회 개최, 간행물 발간, 콘테스트, 캠페인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로 조성하는 정원

라. 모델정원: 정원산업 진흥을 위하여 새롭게 도입되는 정원 관련 기술을 활용하여 조성하는 정원

마.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정원

-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정원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 12. 22.]

- 안 제6조(정원문화의 확산 장려 등)에서는 구청장이 구민 및 공동체의 참여와 협조를 통해 지역 내에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구민의 주도하는 공동체 정원 조성 및 정원문화에 대한 교육, 구민 참여 활성화와 관련 활동을 하는 개인·법인·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음.
- 안 제7조(마을정원사의 양성 및 인증)에서는 구청장이 구민을 대상으로 마을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할 수 있고 교육과정을 이수한 구민에게는 마을정원사 인증서를 수여하도록 하였음.
- 안 제8조(마을정원사의 활용 및 지원 등)에서는 구청장은 정원 관련 사업에 마을정원사를 선발하여 운용하거나 정원을 운영하는 자에게 마을정원사를 활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마을정원사의 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안 제9조(포상)에서는 정원문화 진흥·확산 및 정원산업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도록 하였음.

다. 종합 의견

- 본 조례안은 최근 도시 정원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도심 내 정원 조성 및 정원 관련 산업의 진흥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대응하여 필요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원 정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를 지니고 있으며,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정원문화 확산을 지원하고 정원문화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며, 녹지환경의 체계적인 조성 및 관심은 주민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관련 예산 확보 및 다양한 주민의견 수렴 등에도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회의록 참고

6. 심사결과: 수정가결

가. 수정 이유

- 안 제9조(정원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를 정원문화 확산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신설함에 따라 안 제9조와 중복되는 안 제5조제3호부터 제8호까지를 수정 및 삭제하고,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제10조 및 제11조로 수정함.

나. 수정 내용

- 제5조제3호 중 “기술지도 및 교육”을 “경연대회 및 시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함.
-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제10조 및 제11조로 하고,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함.
제9조(정원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구청장은 정원문화 확산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원에 대한 자료수집·보존 및 전시
 2.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
 3. 정원문화 관련 교육
 4. 정원 관련 체험학습·경연대회 및 박람회 개최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362
----------	--------

제안 연월일: 2024년 11월 6일

제안 자: 성북구청장

1. 수정이유

- 안 제9조(정원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를 정원문화 확산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신설함에 따라 안 제9조와 중복되는 안 제5조제3호부터 제8호까지를 수정 및 삭제하고,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제10조 및 제11조로 수정함.

2. 주요내용

- 제5조제3호 중 “기술지도 및 교육”을 “경연대회 및 시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함.
-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제10조 및 제11조로 하고,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함.
제9조(정원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구청장은 정원문화 확산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원에 대한 자료수집·보존 및 전시
2.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
3. 정원문화 관련 교육
4. 정원 관련 체험학습·경연대회 및 박람회 개최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참고사항

- 예산조치: 해당 없음
- 기타사항: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제3호 중 “기술지도 및 교육”을 “경연대회 및 시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한다.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제10조 및 제11조로 하고,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정원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구청장은 정원문화 확산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원에 대한 자료수집·보존 및 전시
2.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
3. 정원문화 관련 교육
4. 정원 관련 체험학습·경연대회 및 박람회 개최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행	수정안
제5조(정원문화의 발굴·진흥 등) 구청장은 우수한 정원문화의 발굴·진흥 및 정원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1.·2. (생략) 3. 정원에 관한 <u>기술지도 및 교육</u> 4. <u>국내외 정원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u> 5. <u>정원에 관한 자연학습, 행사, 강연회 및 박람회 개최</u> 6. <u>정원에 관한 간행물 발간</u> 7. <u>소식지, 언론 등을 통한 정원 관련 홍보 및 정보제공</u> 8. <u>정원에 관한 콘테스트 및 시상</u> 9.·10. (생략) <u><신설></u>	제5조(정원문화의 발굴·진흥 등) ----- ----- ----- -----. 1.·2. (현행과 같음) 3. ----- <u>경연대회 및 시상</u> <u><삭제></u> <u><삭제></u> <u><삭제></u> <u><삭제></u> 4.·5. (현행 제9호 및 제10호와 같음) <u>제9조(정원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구청장은 정원문화 확산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u>

<u>제9조</u> · <u>제10조</u> (생 략)	다. <u>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u> <u>1. 정원에 대한 자료수집·보존 및 전시</u> <u>2.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u> <u>3. 정원문화 관련 교육</u> <u>4. 정원 관련 체험학습·경연대회 및 박람회 개최 지원</u> <u>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u> <u>제10조</u> · <u>제11조</u> (현행 <u>제9조</u> 및 <u>제10조</u>와 같음)
---------------------------------------	---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을 위하고 국민의 복리 증진과 생활문화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 등을 전시·배치하거나 재배·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말한다.
2. “정원문화”란 성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들이 일상 속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활동과 그 소산을 말한다.
3. “마을정원사”란 식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관리 및 보전·전시하기 위하여 정원전문가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원문화에 대한 구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4조(정원문화의 육성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정원문화 활동을 육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 및 제반여건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원문화시설 및 정원문화프로그램의 조성·개발·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역별 문화적 특색을 살리고, 자연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모든 구민이 일상생활 가까이에서 부담 없이 정원문화를 향유하고, 구민주도로 정원문화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정원문화의 발굴·진흥 등) 구청장은 우수한 정원문화의 발굴·진흥 및 정원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수집·보급 및 관리
2. 정원의 유지관리 및 전시
3. 정원에 관한 **경연대회 및 시상**

4. 정원 캠페인의 추진

5. 그 밖에 정원문화 발굴 및 진흥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정원문화의 확산 지원) ① 구청장은 구민 및 공동체의 참여와 협조를 통해 지역 내에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1. 일상생활 속에서 구민이 주도하는 공동체 정원 조성
2. 구민 대상 교육을 통한 정원문화에 대한 의식 함양

3. 다양한 친환경 캠페인을 통한 구민 참여 활성화

4. 그 밖에 구청장이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등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법인·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7조(마을정원사의 양성 및 인증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마을정원사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구민에게 마을정원사 인증서를 수여하며, 마을정원사의 활동을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제8조(마을정원사의 활용 및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정원 관련 사업에 마을정원사를 선발하여 운용하거나, 정원을 운영하는 자에게 마을정원사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정원 관련 사업을 추진할 때 마을정원사 또는 마을정원사로 구성된 법인·단체의 참여를 장려하고, 그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정원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구청장은 정원문화 확산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원에 대한 자료수집·보존 및 전시

2.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
3. 정원문화 관련 교육
4. 정원 관련 체험학습·경연대회 및 박람회 개최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포상) 구청장은 정원문화 진흥·확산 및 정원산업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년 12. 13.(금)
도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 11. 7. 성북구청장 제출 (의안번호 363호)
- 나. 회부일자: 2024. 11. 15.
- 다. 상정일자: 제308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2024. 11. 25. 상정 · 의결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김종호 건설관리국장)

가. 제안이유

전자게시대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위탁 근거 마련을 위하여 「성북구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옥외광고물 게시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지정벽보판의 위탁 등’에서 ‘옥외광고물 게시시설의 위탁 등’으로 제목을 변경하여, 전자게시대 등 새롭게 등장하는 다양한 형태의 옥외광고 게시시설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다. 참고사항

- 1) 관계법령: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9조제3항

2)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3) 입법예고: 2024. 9. 19. ~ 2024. 10. 10. (21일간), 의견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진만)

가. 개요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게시대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위탁 근거 마련을 위하여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옥외광고물 게시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점임.

나. 검토 내용

- 제목: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지정벽보판의 위탁 등 → 옥외광고물 게시시설의 위탁 등
- 제1항 추가: 시 조례 → 제9조제3항¹⁸⁾ 추가
- 제1항: 따른 → 따른 전자게시대
- 제1항: 지정벽보판 → 지정벽보판 등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 제3항: 현수막 → 전자게시대, 현수막
- 제3항: 지정벽보판 → 지정벽보판 등 옥외광고물 게시시설로 변경

18)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9조(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③ 영 제16조제5항에 따른 전자게시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7.7.13., 2019. 7. 18., 2023.5.22.>

1. 영 제16조제5항제1호다목에 따른 전자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철도역·지하철역·공항·항만·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광장

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 등 경계선으로부터 100미터 이하의 지역

다. 그 밖에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지역

2. 영 제16조제5항제4호에 따른 전자게시대 간 수평거리는 200미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0미터 이상의 범위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3. 점멸 또는 동영상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지화면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지역적인 여건을 고려한 세부적인 관리기준은 구 조례로 정한다

다. 종합 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지정벽보판의 위탁 등’에서 ‘옥외광고물 게시시설의 위탁 등’으로 변경하여, 전자게시대 등 새롭게 등장하는 다양한 형태의 옥외광고 게시시설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회의록 참고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진흥에 관한 조례안



성 북 구
(건설관리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변 호	363
------------	-----

제출년월 : 2024년 11월
제 출 자 : 성북구청장

1. 제안이유

전자게시대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위탁 근거 마련을 위하여
「성북구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옥외광고물 게시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지정벽보판의 위탁 등’에서 ‘옥외광고물
게시시설의 위탁 등’으로 제목을 변경하여, 전자게시대 등 새
롭게 등장하는 다양한 형태의 옥외광고 게시시설의 위탁 근거
를 마련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9조제3항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협의사항: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결과

- 기 간: 2024. 9. 19. ~ 2024. 10. 10. (21일간)

- 방 법: 구보 및 구청 홈페이지 게재
 - 결 과: 의견없음
- 2) 입법예고 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3) 부패/인권/성별/아동영향평가 결과
- 인권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없음
 - 아동영향평가 결과: 해당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 제목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지정벽보판의 위탁 등)”을 “(옥외광
고물 게시시설의 위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조례”를 “조례 제9
조제3항,”으로, “따른”을 “따른 전자게시대,”로, “지정벽보판”을 “지정벽보판
등 옥외광고물 게시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현수막”을 “전자게시
대, 현수막”으로, “지정벽보판”을 “지정벽보판 등 옥외광고물 게시시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1조(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지정벽보판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시 조례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에 따른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지정벽보판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u>현수막</u> 지정게시대 및 <u>지정벽보판</u> 의 위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1조(옥외광고물 게시시설의 위탁 등) ① ----- -- 조례 제9조제3항, ----- -- 따른 전자게시대, ----- - 지정벽보판 등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 -----. ② (현행과 같음) ③ <u>전자게시대, 현수막</u> ----- ----- <u>지정벽보판 등 옥외광고물 게시시설</u> ----- -----.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년 12. 13.(금)
도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 11. 7. 성북구청장 제출 (의안번호 364호)
- 나. 회부일자: 2024. 11. 15.
- 다. 상정일자: 제308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2024. 11. 25. 상정·의결 (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김종호 건설교통국장)

가. 제안이유

대형공사 및 주요 시설물에 적용하는 설계, 진단 등의 적정성 검증체계를 중소 규모 시민 이용 시설물에도 확대 적용함으로써 안전·품질을 향상시키고, 시설물 생애주기 전반의 관리체계를 확립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조례의 목적과 설치 및 기능 규정(안 제1조, 제2조)
 -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건설기술심의 대상 정비
 -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위원회 심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 신설
- 2) 위원회 구성, 해촉, 소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제15조)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문 신설
 - 소위원회 심의·의결 기준 신설

3) 수당 및 검토비에 대해 규정(안 제16조)

다. 참고사항

1) 관계법령: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

2)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3) 협의사항: 해당사항 없음

4) 입법예고:

- 기 간: 2024. 9. 19. ~ 2024. 10. 10. (21일간)

- 방 법: 성북구보 및 홈페이지

- 결 과: 별도 의견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진만)

가. 개요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상위법령인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성북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설치·운영되고 있었으나, 대형공사 및 주요 시설물에 적용하는 검증 체계를 중·소규모(100억 미만) 시설물에도 확대 적용하기 위하여 서울시의 표준조례안(2023. 12. 14.)을 바탕으로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건설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임.

나. 검토 내용

○ 안 제1조(목적)에서는 법 제6조¹⁹⁾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²⁰⁾에 따라

19) 제6조(기술자문위원회) ①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발주청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발주청에 기술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발주청이 정한다.

20) 제19조(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① 기술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발주청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중앙심의위원회, 지방심의위원회, 특별심의위원회 또는 다른 발주청의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명시하였으며,

○ 안 제2조(설치 및 기능)에서는 기존 ‘자문’ 기능에 ‘심의·의결’을 추가함.

- 제2항제1호: 심의·의결 사항으로 총공사비가 100억원 미만인 구조물의 신설이 수반되는 건설공사의 설계 적정성에 관한 사항,
- 제2항제2호부터 7호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제2호, 제3호, 제4호, 제7호²¹⁾ 등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

2. 관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해당 분야의 전문가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되는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위촉된 민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0. 12. 8.>

③ 발주청은 기술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계획·조사·설계 용역의 수행단계에서 제5항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대하여 1회 이상 기술자문위원회에 자문해야 한다. 다만, 계획·조사·설계 용역의 규모가 작거나 자문할 만한 중요한 사항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0. 12. 8.>

④ 발주청은 제3항 본문에 따른 자문에 대하여 의견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0. 12. 8.>

21) 제19조(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⑤ 기술자문위원회는 발주청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 1. 16., 2019. 4. 23., 2020. 1. 7., 2020. 12. 8., 2021. 9. 14.>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6항 본문에 따른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3. 총공사비 10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총공사비가 10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 변경 등 중대한 설계 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6. 제52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해당 기술자문위원회가 속한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의 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과 기술평가의 방법·기준 및 입찰공고안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에 부치는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 현행법상 1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만 설계심의 대상에 해당되어 100억원 미만의 중소규모 시설물이 제도상 관리대상에서 누락되는 현행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한 것임.

○ 안 제3조(구성)에서는

- 위원회 구성: 15명 이내 → 15명 이상 30명 이내
- 위원 위촉방법: 구청장 위촉 또는 위촉 → 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
- 임기: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 → 한 차례만 연임

○ 안 제4조(위원의 해촉 등): 상위법령(영 제22조)²²⁾에 맞추어 변경

○ 안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상위법령(영 제20조제1항)²³⁾에 따

7. 그 밖에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하여 발주청이 자문하는 사항
22) 제22조(위원의 해촉 등)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3.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4. 설계 또는 기술제안서 심의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비위사실(非違事實)이 있는 경우
5.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6. 담당 심의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
7. 임명이나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8. 임명이나 위촉 시 경력, 학력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 전력(前歷)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9. 중앙심의위원회등의 소관 분과위원회의 위원으로서 해당 분과위원회 윤리강령을 위반한 경우

23) 제2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중앙심의위원회, 지방심의위원회, 특별심의위원회 및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중앙심의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위원(이하 이 조, 제21조 및 제22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라 변경

- 안 제6조(직무):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위원장이 대행하고, 필요한 경우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임시위원장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함.
- 안 제7조(심의·자문 요청 등):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한 사항을 명시함
- 안 제8조(위원회의 회의): 위원회의 회의 방법 등을 명시하였으며 전부개정 전 조례와 내용이 같음
- 안 제9조(처리 기간 및 결과 통보): 위원회 소집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심의 요청자에게 통보하는 사항을 명시함
- 안 제10조 ~ 제12조(소위원회): 기존 제9조를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로 변경하여 소위원회의 구성(5명 이상 20명 이하)과 회의 소집, 심의·의결에 대해 체계적으로 정비하였음.
- 안 제13조(의견 청취 등): 「건설기술관리법」(1987. 10. 24.)이 2014년 5월 23일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전부개정되어 상위법령에 따라 일치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전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인 건설공사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6. 위원이 해당 안전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감정(鑑定) 또는 조사를 한 경우
 7.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전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8.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시킴.

- 안 제14조(심의·자문 사항의 사후 관리): 기존 제11조 결과보고를 구체화하여 제9조제2항에 따라 심의 또는 자문 결과의 통지를 받은 자는 그 조치 내용을 구청장에게 보고토록 명시함.

다. 종합 의견

- 본 전부개정안은 건설기술자문위원회에 심의·의결 기능을 부여하고 그에 따른 위원회 구성 등을 정비하여 중·소규모(100억 미만 건설공사) 시설물을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 및 신설된 조항들은 조례로 위임한 상위 법령의 취지에 부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회의록 참고

6. 심사결과: 수정가결

가. 수정 이유

- 안 제2조, 제3조, 제5조, 제11조를 내용에 맞게 자구 및 띄어쓰기를 수정하고 위원회에서 충분히 재심의 할 수 있는 사항으로 중복되는 제12조제3호를 삭제함.

나. 수정 내용

- 제2조제2항제6호 중 “**성북구가**”를 “**구가**”로 함.
- 제3조의 제목 “**(구성)**”을 “**(구성 및 임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건설기술진흥법」 제5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로 함.
- 제5조제2항 전단 중 “**기피신청**”을 “**기피 신청**”으로 함.
- 제11조제2항 중 “**회의개최**”를 “**회의 개최**”로 함.
- **제12조제3호를 삭제함.**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364
----------	--------

제안 연월일: 2024년 11월 7일

제안 자: 성북구청장

1. 수정이유

- 안 제2조, 제3조, 제5조, 제11조를 내용에 맞게 자구 및 띄어쓰기를 수정하고 위원회에서 충분히 재심의 할 수 있는 사항으로 중복되는 제12조제3호를 삭제함.

2. 주요내용

- 제2조제2항제6호 중 “성북구가”를 “구가”로 함.
- 제3조의 제목 “(구성)”을 “(구성 및 임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건설기술진흥법」 제5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로 함.
- 제5조제2항 전단 중 “기피신청”을 “기피 신청”으로 함.
- 제11조제2항 중 “회의개최”를 “회의 개최”로 함.
- 제12조제3호를 삭제함.

3. 참고사항

- 예산조치: 해당 없음
- 기타사항: 해당 없음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생 략)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②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영 제19조제5항제7호에 따른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 의 적정성에 관하여 <u>성북구가</u> 자문하는 사항	6. ----- ----- ----- <u>구가</u> ----- -----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조(<u>구성</u>) ①·② (생 략)	제3조(<u>구성 및 임기</u>) ①·② (현행 과 같음)
③ 위원회의 위원은 구의원 1명 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구청장이 임명하거 나 위촉한다.	③ ----- ----- ----- ----- -----.
1. 「 <u>건설기술진흥법</u> 」 제5조에 따른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 회,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다른 발주청의 기술자문위원 회 위원	1. 「 <u>건설기술 진흥법</u> 」 제5조- ----- ----- ----- ----- -----

2. 3. (생략)	2. 3. (현행과 같음)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하여 <u>기피신청</u> 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 ----- ----- ----- <u>기피 신청</u> ----- ----- -----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11조(소위원회 회의 소집) ① (생략)	제11조(소위원회 회의 소집)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u>회의개최</u> 통지서를 받은 심의요청자는 직접 소위원회에 출석하여 안건의 내용을 설명하고, 관련 책임기술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대신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② ----- <u>회의 개최</u> ----- ----- ----- ----- ----- ----- -----.
제12조(소위원회 심의·의결)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제12조(소위원회 심의·의결)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u>재심의 : 해당 안건의 결함이 중대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u>	<u><삭 제></u>

<u>재작성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u> <u>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u> <u>단되는 안건</u>	
--	--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설공사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 총공사비가 100억원 미만인 구조물의 신설이 수반되는 건설공사의 설계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다만,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소규모 교량 및 복개구조물 등 주요공사의 설계 적정성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5항제2호에 따른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3. 영 제19조제5항제3호에 따른 총공사비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영 제19조제5항제4호에 따른 총공사비가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 변경 등 중대한 설계 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5. 영 제19조제5항제5호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 소관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6. 영 제19조제5항제7호에 따른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하여 **구가** 자문하는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안건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3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맡고, 부위원장은 해당업무 담당국장이 맡는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구의원 1명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지방

건설기술심의위원회,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다른 발주청의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2. 건설공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분야 전문가

가. 건설업무와 관련된 구 5급 이상 공무원

나. 대학에서 건설분야 관련 대학교수

다. 기술사나 건축사 자격취득자,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라. 건설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의 연구원

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
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등)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면직하거나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면직 또는 해촉을 희망한 경우

2. 영 제22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은 영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
(除斥)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하여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심의안건에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발생될 때에는 위원을 새로 위촉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임시위원장을 선임할 수 있다.

제7조(심의·자문 요청 등)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으려는 자는 관계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이를 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제2조제2항의 안건이 발생한 경우, 제7조에 따라 구청장이 회의에 부친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안건명 및 회의일시·회의장소 등을 기재한 회의 개최 통지서를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각 위원과 심의요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통지의 방법이나 일시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처리 기간 및 결과 통보) ① 위원장은 제8조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그 심의 또는 자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심의 또는 자문 결과를 제7조의 심의요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은 안건은 전체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소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맡는다. 다만, 소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진행할 소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④ 소위원회는 소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에서 정한 범위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일시적으로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⑤ 소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 주관부서에서는 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제11조(소위원회 회의 소집) ① 소위원장은 소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안전명 및 회의일시·회의장소 등을 기재한 회의 개최 통지서를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각 위원과 심의요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통지의 방법이나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 개최 통지서를 받은 심의요청자는 직접 소위원회에 출석하여 안전의 내용을 설명하고, 관련 책임기술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대신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소위원회 심의·의결)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안전을 심의·의결한다.

1. 원안채택 : 해당 안전에 결함이 없거나 그 결함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안전
2. 조건부채택 : 해당 안전의 결함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수정 또는 보완하는 조건으로 채택하는 안전

제13조(의견 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

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건설기술 진흥법」 제9조에 따른 건설기술연구기관 및 그 밖의 관계기관,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심의·자문 사항의 사후 관리) 제9조제2항에 따라 심의 또는 자문 결과의 통지를 받은 자는 그 조치 내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회의록) 위원회의 서기는 회의를 개최할 시 다음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 안건명, 개최 일시 및 장소
2. 위원회 참석위원 명부
3. 자문 주요내용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수당 및 검토비 등) ① 구청장은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및 심의안건 검토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구청장은 제13조 후단에 따라 건설기술연구기관 및 그 밖의 관계기관,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검토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생략)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②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6. 영 제19조제5항제7호에 따른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하여 <u>성북구가</u> 자문하는 사항	6. ----- ----- ----- <u>구가</u> ----- -----
7. (생략)	7. (현행과 같음)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3조(<u>구성</u>) ①·② (생략)	제3조(<u>구성 및 임기</u>)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위원은 구의원 1명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 ----- ----- ----- -----.
1. 「 <u>건설기술진흥법</u> 」 제5조에 따른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다른 발주청의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1. 「 <u>건설기술 진흥법</u> 」 제5조----- ----- ----- ----- -----

2. 3. (생략)	2. 3. (현행과 같음)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해당 안전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하여 <u>기피신청</u> 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 ----- ----- ----- <u>기피 신청</u> ----- ----- -----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11조(소위원회 회의 소집) ① (생략)	제11조(소위원회 회의 소집)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u>회의개최</u> 통지서를 받은 심의요청자는 직접 소위원회에 출석하여 안전의 내용을 설명하고, 관련 책임기술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대신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② ----- <u>회의 개최</u> ----- ----- ----- ----- ----- ----- -----.
제12조(소위원회 심의·의결)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안전을 심의·의결한다.	제12조(소위원회 심의·의결)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u>재심의 : 해당 안전의 결함이</u>	<u><삭 제></u>

중대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
단되는 안건